

1. 영국

1) 급여 종류

- 산업재해장해급여: 업무상 사고에 따른 장해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장해에 대한 급여
- (상시/정률)간병수당: 산업재해장해급여 및 전쟁장해연금을 받고 있으며 장해로 인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상시 수당으로 청구
- 특별중증장해수당: 간병수당 중 높은 등급에 해당하고 영구적이고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인 금액을 청구
- 소득(감소)수당: 업무상 재해 이전보다 소득을 얻기 어려운 경우 주당 최대 £75.44의 감소수당을 청구하는 것으로 1990년 10월 1일 이전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만 적용
- 퇴직수당: 소득(감소)수당이 일정 금액 이상이고 고용 상태가 아닌 경우, 주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면 퇴직수당이 소득(감소)수당을 대체하여 지급

2) 안전보건청 (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 영국은 노동행정을 독립적인 정부기관이나 반독립적인 정부기관에 위임. 주로 안전보건청 (HSE)에서 관리함.

(1) 상황 별 맞춤 안내: 직원과 대화 방법, 지원 서비스, 상황 별 대처법

Support with employee health and disability

This guidance is for employers and managers.

It will help you support employees and understand any legal requirements.
There are links to government and other organisations that can help.

The guidance will help you with:

- managing absences and keeping in touch
- having conversations with your employee, in and out of work
- deciding on changes to help them stay or come back to work
- protecting your business and your employees with policies and procedures
- managing complex situations

How this service works

You will see questions about your situation and advice based on your answers.

The service does not store personal information, but you can save and print the guidance.

Start now >

①

Is your employee currently at work?

② 선택

☒

Yes, they're working

☐

No, they're off work

Your employee is absent from work (not including planned holidays)

Continue

③

This section: paying your employee

You must pay Statutory Sick Pay if your employee is eligible

결과

Your employee has been off work for 25 days. This includes non-working days.



You must pay Statutory Sick Pay (SSP) if your employee is eligible.

[Check your employee's eligibility and calculate how much you need to pay \(opens in new tab\)](#). You pay SSP instead of a normal salary. You cannot reclaim this cost from the government.

Paying extra sick pay

Some employers choose to pay their own sick pay. This is in addition to SSP. If you offer additional sick pay you can decide when to start and stop paying it, and how much to pay.

Asking for medical evidence

You can choose to ask for medical evidence of your employee's absence before you pay SSP. Examples include a letter from a hospital, or [a fit note \(opens in new tab\)](#). Fit notes used to be called sick notes.

Keeping records of conversations and meetings

If you do ask for medical evidence, remember to keep a record of when you asked and what you received. This could help to protect your business if you need to show evidence of your communication with your employee.

If your employee is off work for more than 28 weeks

SSP stops being paid to employees after 28 weeks. Some employers choose to continue to pay their own sick pay after this time.

Next section: having conversations with your employee

Continue

Finish and go to summary

3) 노동연금부 (Department for Work & Pensions)의 Access to work): 장애인 고용 복지제도

(1) 업무로 인한 정신 질환, 장애 발생시 고용 보장

(2) 보조금 지급

- 지급 목적: 보조 장비 구입, 지원 소프트웨어 구입, 수화 지원 인력 지원, 직업 상담사 지원, 출퇴근 비용 지원 등

(3) 정신 건강 프로그램

- 전문의와 일대일 상담

(4) 면접 지원 프로그램

- 청각 장애 시 의사소통 지원 인력 지원

2. 미국

1) 급여 종류

(1) 요양 급여 (Medical Care)

- 재해에 따른 부상 및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

(2) 장애/손해배상급여 (Disability/Indemnity benefits)

- 일시적 완전 장애급여 (TTD, Temporary Total Disability): 치료 중 손실된 소득의 일부(일반적으로 2/3) 보상, 부분적으로 직업복귀한 경우 부분 보상
- 일시적 부분장애 급여 (TPD, Temporary Partial Disability): 근로능력의 일부만 상실되는 경미한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량/시간 경감 등을 통해 부분 보상
- 영구적 완전장애 급여(PTD, Permanent Total Disability): 직장으로 복귀할 수 없는 영구적인 장애 보상
- 영구적 부분장애급여(PPD, Permanent Partial Disability): 영구적인 신체 일부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한 보상

(3) 사망급여 (Death benefits)

- 장의비와 유족급여

2) Workers' Compensation Program

(1)

- 산업재해 피해자, 직업병 피해자 대상 실업 급여, 의료비, 직업 교육, 의료 지원
- The Federal Employees' Compensation Act (FECA)에 근거함.
- 계약직, 자원봉사자, 기간제 노동자도 대상.
- 노동부 (the Department of Labor)의 Office of Workers' Compensation Programs(OWCP)이 관할

(2) OWCP (Office of Workers' Compensation Programs)

- OWCP 홈페이지: 직종별 지원 안내

Office of Workers' Compensation Programs

FEDERAL EMPLOYEES

NUCLEAR WEAPONS WORKERS

COAL MINE WORKERS

LONGSHORE AND DBA

- 보상청구 방법 안내
- 직업 교육 안내
- 의료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 산재 피해자의 opioid(마약류) 중독 치료 및 남용 방지
- 업무 수행 관련 코로나 19 확진 시 보상

3. 독일 (1996년 8월 7일의 사회법전 제7권)

(1) 급여 종류: 요양급여, 취업재활급여, 사회재활급여, 보완재활급여, 간병필요성이 있을 때의 급여 및 현금급여

(2) 요양 서비스

- 1차적 처치: 사내의사, 응급실 의사, 앰블란스 의사 등을 통한 최초의 의사적 처치로 산재자의 신체와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의학적 조력 대책
- 의사의 처치: 상담, 진단서 발급, 신체적 개입, 붕대, 의약품의 처방
- 의치수술을 포함한 치과처치
- 의약품, 붕대, 치료수단 및 보조기구
- 재가간병: 병원간병에 대한 대체물이며 환자가 가능한 한 조속히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
- 병원과 재활시설에서의 처치
- 노동부하측정과 작업요법을 포함한 의학적 재활을 위한 조치들

(3) 직업재활급여

- 취업촉진을 위한 급여를 포함한 취업상태의 유지 또는 획득을 위한 급여
- 건강손상 때문에 요구되는 기초훈련을 포함한 직업준비
- 직업적응, 심화훈련, 양성훈련, 전직교육, 이들 급여를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 졸업
- 적절한 학교교육을 위한 보조, 그를 위한 준비 또는 학교교육의무가 시작되기 전 정신적, 육체적 능력의 개발을 위한 준비를 포함
- 장애인 전용 작업장의 입소절차와 훈련영역에서 작업 및 작업장려

(4) 사회재활급여와 기타 보완급여

- 차량보조

- 주거보조

- 가사보조

- 여행비: 교통비, 운송비, 숙박비, 식비, 화물운송비, 도로구간 및 지참물 보상

(5) 간병이 필요한 경우의 급여

- 피보험자가 보험사례로 인하여 무력해져서 일상생활의 평범하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행위수행에 현격한 정도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간병비가 지급되어, 간병인을 두거나 시설에서 간병을 받게 된다.

(6) 요양과 직업재활기간 중의 현금급여

- 휴업급여 지급: 산재사례로 인하여 노동불능이 되거나 요양대책 때문에 전일 소득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노동불능 또는 요양이 시작되기 직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질병보조금, 휴업급여, 질병부가보조금, 전환급여, 생활비, 단기근로자보조금, 동절기 수당, 실업급여, 실업보조 또는 모성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경우 휴업급여

(7) 재활관련 기관 및 인력

- 재활(수행)기관

: 재활사업에 대한 업무 수행

: 사회 보험자 사회부조나 부양 담당자로서 그 업무를 자율적이고 자기책임 하에 수행

- 직업재활의 특수시설

: 재활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위탁하는 시설

: 양성훈련과 직업준비를 담당하는 직업교육소(BBW)와 전환훈련, 향상훈련을 담당하는 직업촉진소(BFW) 등이 있음

- 기타 재활관련 담당자(의사)

: 의료재활이나 기타 재활의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주고, 이를 재활기관에 알리는 역할

: 아직 재활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상담을 하고, 질병금고(의료보험자)에 통보

4. 프랑스

5. 이탈리아

1) 산재보험제도의 특징

- 국가에 의한 강제보험형식

- INAIL (Istituto Nazionale per l'Assicurazione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전국 산재보험공단)에서 운영

- 대상 업무 제한

: 근로자가 사용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작동시키고 있지 않은 기계, 프레스 기구, 전기 또는 열 기구 또는 설비를 작동하는 사람의 업무

: 1965년 대통령령 제1124호 제1조 제1항 전단의 기계, 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된 공장 내에서의 업무

: 관습적으로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되어 온 28개의 업무 및 그것을 기술적으로 보조하는 업무

- 산업재해보험급여의 대상: 산업재해, 직업병, 통근재해, 생물학적 손해(법의학적인 평가가 가능한 인격의 정신생리학적 완전성의 손상에 대해 노동능력의 상실과는 별도로 보상 대상으로 한 것으로 기존 장애보상제도를 크게 개정)

2) 산재보험제도의 종류

- 금전급여

: INAIL이 관장

: 일시적 절대적 노동불능의 경우의 휴업급여 (indennità)

: 영속적 노동불능의 경우의 장애연금 (rendita di inabilità)

: 계속적인 간병에 대한 수당 (assegno per l'assistenza personale continuativa)

: 사망의 경우 유족연금 (rendita ai superstiti) 및 일시금 (장의비(assegno funerario))

- 의료급여

: 국민보건서비스제도가 관장

: 내과적 요양 및 외과적 요양

: 보장구 (Protesi)의 제공

6. 일본

1) 후생노동성

- 의료재활

: 1947년 제정된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자건강복지기구에서 담당

- 직업재활

: 1960년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고령, 장애인고용지원기구에서 담당

- 산재장애인의 보상금 지급업무

: 각 지방 노동기준감독관이 담당한다.

2) 키비코겐 종합재활센터

- 중증산재근로자에게 치료부터 직업재활까지 일관된 서비스 제공

- 의료재활센터와 직업재활센터로 구성

- 의료재활센터와 직업재활센터가 상호 연계하여 재활평가와 함께 개별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별 케어 계획 수립

3) 종합척수손상센터

-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척수손상환자를 대상으로 함

- 종합척수손상센터 내에 척수손상자직업센터가 있으며, 상호 연계하여 척수손상 산재장애인의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을 함께 제공함.

- 키비코겐 종합재활센터와 달리

척수손상 산재장애인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병원과 직업센터가 상호 연계하여 재활평가, 회복상태, 퇴원 후의 케어 등을 고려하여 개별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참고자료

정슬기. (2022). 영국의 산재보상제도와 합리성 판단기준. 사회법연구, 48, 281-313.

Get help from Access to Work

<https://www.dol.gov/agencies/owcp>

<https://www.doi.gov/>

독일 산재보험법 해설서 / 근로복지공단

독일의 장애인 직업재활체계에 관한 연구 : 산재보험 피재자를 중심으로 / 정연택

신수정. (2018). 이탈리아의 산재보험제도. 노동법논총, 42, 321-350.

홍자영. (2007). 일본의 산재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체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